



##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약관

### 제 1 조 적용범위

- ① 「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」(이하 "이 예금"이라 한다)이란 예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입출금하는 예금을 말한다.
-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, 카카오뱅크 모바일뱅킹서비스 이용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.

### 제 2 조 이자

- ④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 중 다음 예금의 이자는 해당 기준일에 셈하여 그에 이은 익일(이하 "원가일"이라 한다)에 원금에 더한다.
  - 1. 보통예금 : 매월 네번째 금요일
  - 2. 기업자유예금 : 매년 3 월, 6 월, 9 월, 12 월의 네번째 금요일
- ⑤ 이 예금의 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,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모바일앱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금리로 셈한다.
- ⑥ 이 예금의 이자는 제 1 항에 따른 이자지급을 제외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 년까지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지급하고, 5 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를 원금에 더하지 않고,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### 제 3 조 거래증지계좌

한국카카오은행 주식회사(이하 "카카오뱅크"라 한다)는 이 예금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증지계좌로 따로 관리하여 입출금, 잔액조회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고객이 거래증지계좌로 입출금, 잔액조회 등을 신청한 때 카카오뱅크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후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- 1. 예금잔액이 10,000 원 미만이며, 1 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
- 2. 예금잔액이 10,000 원 이상 50,000 원 미만이며, 2 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
- 3. 예금잔액이 50,000 원 이상 100,000 원 미만이며, 3 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

### 제 4 조 거래제한

이 예금이 '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'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, 예금 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.



## 변경 전·후 대비표 (입출금이자자유로운예금 약관)

변경 전	변경 후	비고
<p><b>제 1 조 적용범위 (생략)</b></p> <p><b>제 2 조 이자</b> ④ 이 예금의 이자는 매월 네번째 금요일(기준일)에 셈하여 그에 이은 익일(이하 '원가일'이라 한다)에 원금에 더한다.</p> <p>②~③ (생략)</p> <p><b>제 3 조 거래중지계좌</b> 한국카카오은행 주식회사(이하 "카카오뱅크"라 한다)는 이 예금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중지계좌로 따로 관리하여 입출금, 잔액조회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고객이 거래중지계좌로 입출금, 잔액조회 등을 신청한 때 카카오뱅크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후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 <p>① 예금잔액이 10,000 원 미만이며, 1 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② 예금잔액이 10,000 원 이상 50,000 원 미만이며, 2 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③ 예금잔액이 50,000 원 이상 100,000 원 미만이며, 3 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</p> <p><b>제 4 조 거래제한</b> 이 예금이 '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'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, 예금 명의인에 대한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.</p>	<p><b>제 1 조 적용범위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<b>제 2 조 이자</b> ① <u>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 중 다음 예금의 이자는 해당 기준일에 셈하여 그에 이은 익일(이하 "원가일"이라 한다)에 원금에 더한다.</u> <b>1. 보통예금 : 매월 네번째 금요일</b> <b>2. 기업자유예금 : 매년 3 월, 6 월, 9 월, 12 월의 네번째 금요일</b>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 3 조 거래중지계좌</b> 한국카카오은행 주식회사(이하 "카카오뱅크"라 한다)는 이 예금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중지계좌로 따로 관리하여 입출금, 잔액조회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고객이 거래중지계좌로 입출금, 잔액조회 등을 신청한 때 카카오뱅크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후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 <p>1. 예금잔액이 10,000 원 미만이며, 1 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2. 예금잔액이 10,000 원 이상 50,000 원 미만이며, 2 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3. 예금잔액이 50,000 원 이상 100,000 원 미만이며, 3 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</p> <p><b>제 4 조 거래제한</b> 이 예금이 '<u>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</u>'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, 예금 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.</p>	<p>예금과목 추가</p> <p>각호의 양식 정정</p> <p>현행 법령명으로 정정</p>